

1. 개정이유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며,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서식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 신설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8333호)으로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1호의5 서식)

나.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안 별표1)

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규정 신설(안 별표4)

라.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안 별표 5)

마.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인 등록정보는 개인정보일뿐 아니라,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2)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의5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같은 조 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32조제7항”을 각각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공통 기준

1. 장애정도의 구분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제2항에 따라 장애 유형별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한다.

2. 장애정도 판정원칙

제2항에서 정하는 ‘심한 장애’의 장애상태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상태는 각 장애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이다.

3.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같은 표에 “제2항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기준”을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2항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해장애인 쉼터	가.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나. 피해장애아동 쉼터: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	--

별표 5 I 제5호의 시설의 장자격기준란 (4)를 (5)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총무자격기준란 (2)를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회재활교사자격기준란 (2)를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시설훈련교사자격기준란 (3)을 (4)로 하고, 같은 란에 (3)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II 제2호 나목 1) 차) 본문 중 “관광”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관장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며, 같은 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고, 같은 가) 1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며, 같은 가)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고, 같은 가)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며, 같은 가) 4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고, 같은 표 IV 제2호 가목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1)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로 하며, 같은 표 별표 5 V 제5호가목1)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마)부터 사)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라)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사)(중전의 바)) 중 “마)까지”를 “바)까지”로 하고, 같은 목 2)다) 및 라)를 각각 라) 및 마)로 하며, 같은 란에 다)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마)(중전의 라)) 중 “다)까지”를 “라)까지”

로 하며, 같은 목 3)다)를 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	------	------	------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남 []여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간접적 소득(감면 등)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일상생활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호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해당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조정 []재판정	• 재발급 사유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카드전환(-) []기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포함 [] 미포함	[]신규 []재발급 []정보변경 []반납	
	[]신용기능 []작불기능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정보변경 []반납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신규 []재발급	• 반납사유 []사망 []양도·증여 []폐차 []등록말소 []기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감면서비스(대행)신청】

[]휴대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TV 수신료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고용 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업진로상담 []취업지원 및 상담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장애인사용자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관계)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및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인급여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국가유공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인사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1. 자동차등록증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인사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자동차 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쓰 못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처리 동의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감면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감면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장애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 「장애인연금」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관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와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안내 및 동의사항**

-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차량교체 시 재발급서류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지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본인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 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 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장애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정도 확인 등을 위한 심사자료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u>같은 조 제7항</u>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② <u>법 제32조제7항</u> 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u>법 제32조제7항</u> 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 ----- ----- <u>법 제32조의9제2항</u> ----- ----- ----- ----- ----- ----- ----- ----- ② <u>법 제32조의9제2항</u> ----- ----- ----- ----- ----- ----- ----- ----- ----- ----- ③ ----- <u>법 제32조의9제2항</u> ----- ----- ----- ----- ----- ----- ----- ----- ----- -----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제목 신설> 1. <신 설> 2. <신 설> 3. <현행 제16호에서 이동> <제목 신설> 1.~15. (생략) 16. (생략)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u>제1항 공통 기준</u> <u>1. 장애정도의 구분</u> <u>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제2항에 따라 장애 유형별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한다.</u> <u>2. 장애정도 판정원칙</u> <u>제2항에서 정하는 ‘심한 장애’의 장애상태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상태는 각 장애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이다.</u> <u>3. (현행 제16호와 같음)</u> <u>제2항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u> 1.~15. (현행과 같음) I6. (제1항 제3호로 이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6. <신설> 가. <신 설>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u>6. 피해장애인 쉼터</u> <u>가.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u>

나. <신 설>	<u>시설</u>
	<u>나. 피해장애아동 쉼터: 학대로 인</u>
	<u>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시설</u>